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94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이헌승·이성권·박덕흠

유용원 • 백종헌 • 주호영

정성국 · 김재섭 · 김승수

김선교 · 서지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동물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, 경제적·지역별접근성 차이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, 공공동물병원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 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).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6 및 제17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6(공공동물병원의 지정 및 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.

- 1.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
- 2.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실·유기동물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 지원
- 3.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 지원
-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
- ②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여야 하며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·특별자치시장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은 공공동물병원의 시설·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공공동물병원 지정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7조의7(공공동물병원의 지정 취소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공공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
 - 3. 제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4. 제17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 - 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공동물병원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공공동물병원에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

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 특별자치시장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은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 한 다.

제3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공공동물병원의 지정취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< 선 설> 제17조의6(공공동물병원의 지정 및 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・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. 1.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2.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실・유기동물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 지원 |
|--|
| 3.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6호 에 따른 봉사동물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 지원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 ②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 물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인 |

하며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은 공공동물병원의 시설·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공공동물병원 지정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7(공공동물병원의 지정 취소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공공동물병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
<신 설>

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 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
- 3. 제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경우
- 4. 제17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공공동물병원은 지정이 취 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공 공동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 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공공 동물병원에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

제22조(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) ① (생 략)
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 자치시장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 제36조(청문)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(생 략) <u><신 설></u>
 - 2. 3. (생략)

| 하여야 한다.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제22조(공수의의 | 수당 | 및 | 여비) |
| ① (현행과 같음 | 슬) | | |
| ② <u>시·도지사</u> | 는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제36조(청문)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1. (현행과 같음 | $\left(\frac{2}{1}\right)$ | | |
| 1의2. 제17조의 | 비7제1호 | 항에 | 따른 |
| 공공동물병원 | 의 지경 | 정취 2 | <u></u> |
| 2. • 3. (현행과 | 같음) | | |